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9. 7. 24.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9년 7월 11일
- 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 : 2019년 7월 19일
- 라. 상정일자 : 제21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제1차 사회건설위원회(2019. 7. 22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복지국장 이성자)

- 가. 제안이유
 -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 긴급복지와 관련된 위기사유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긴급복지 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- 위기사유 확대에 따른 각 호 변경 및 조문 일부 정비(안 제1조, 제3조, 제4조)
 - 당초 법 제2조제6호를 법 제2조제8호로 변경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이정옥)

- 본 건은 조례의 근거법령인 「긴급복지지원법」의 개정(개정 2018.12.11., 시행 2019. 6.12.)으로 조례위임조문이 변경되어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- 주요 내용으로
 - 안 제1조와 제3조에서는 인용한 상위법령의 근거조항을 법 제2조제8호로 변경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개정된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37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9. 7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 긴급복지와 관련된 위기사유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긴급복지 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기사유 확대에 따른 각 호 변경 및 조문 일부 정비(안 제2조, 제4조)

1) 당초 법 제2조제6호를 법 제2조제8호로 변경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긴급복지지원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(2019. 5. 16. ~ 6. 5. / 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2조제6호”를 “제2조제8호”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2조제6항”을 “법 제2조제8호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긴급지원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긴급지원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긴급복지지원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<u>제2조 제6호</u>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특성에 맞는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) <u>법 제2조제6항</u>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/p> <p>1. ~ 12. (생략)</p> <p>제4조(긴급지원심의위원회) <u>법 제12조제1항</u>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한 <u>긴급지원심의위원회</u>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<u>법 제12조제4항</u>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----- ----- <u>제2조 제8호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3조(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) <u>법 제2조제8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1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4 조 (긴 급 지 원 심 의 위 원 회) ----- ----- <u>긴급지원심의위원</u> <u>회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